

해외통관애로

일본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신재형 | 일본 관세관



신재형
일본 관세관

일본의 통상환경 및 통관제도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나라이다. 특히, 세관 용어,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리만큼 비슷하지만, 실제 통관절차에서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의 제도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충실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주일본 대사관 또는 KOTRA, aT 등 다양한 기관과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



I. 들어가며

일본은 세계적인 거대 소비시장이며, 우리 나라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과 더불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양국 간 정치외교적 사안에 따라 교역량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2018년 무역통계를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의 5대 수출국이자 3대 수입 국으로 일본은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신뢰제일주의라는 특성은 진출 초기에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진출에 성공하게 되면 다른 나라 시장 개척의 보증수표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보이지 않는 통관장벽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세관의 자의적인 법규정 해석은 거의 없는 편이나 정확한 정보가 수출입기업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일본 진출을 위해서 수출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신속한 통관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II. 일본 수입통관 제도의 개요 및 여러 가지 제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수입물품은 국내에 반입하려고 할 때 원칙적으로 ①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때 ②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③ 수입(납세)신고를 행하여 세관에서 심사를 하고, 세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검사를 마친 후에 관세, 내국세 및 지방소비세 납부 등 ④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비로소 수입 허가를 받고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⑤ 관세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에 의해 수입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만 한다.

이 일련의 절차를 행함에 있어서 세관은 수출입 금지품목을 수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수입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고사항 이외의 물품이 반입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착안사항에 이루어져 심사 및 검사를 행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통관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제이란, 수입하려는 물품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 또는 수입 관련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세관의 심사 또는 검사 여부를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①번 요건의 완화)

동 제도는 신선물품, 거래처 납기가 촉박한 물품, 크리스마스·명절용품 등 판매 기회가 한정된 물품, 타 법령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물품, 수입신고된 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 등 서류 심사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에 활용하면 유용하다.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물품의 도착 전에 서류 심사를 행할 수 있고, 타 법령에 의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세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검사 여부가 수입신고 이전에 판명되므로 화물 인수 일정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단, 검사 여부를 사전에 통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다.)

예비심사 제도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예비신고서(수입신고서),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물품의 장치가 예정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수입신고 예정일의 관세환율이 공시되는 날 또는 예비신고 대상 물품의 선하증권(항공의 경우 AWB)이 발행되는 날 중 늦은 날이다.

2.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 제도

수출입신고관서 자유화 제도는 AEO 사업자(수출자, 수입자, 통관업자)가 수입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관서 이외의 관서에 수출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번 요건의 완화) 즉, 수출입자 또는 통관업자 중 한 쪽이 AEO 사업자인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수출자 또는 일본의 수입자가 AEO인 경우, 혹은 수입신고를 대행해 주는 통관업자가 AEO인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NAACS(일본의 수출입 및 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 제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제도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3. 사전교시제도

사전교시제도는 수출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감면세의 4개 분야에 대해 세관이 사전에 조회신청을 받아 회답해주는 제도이다. (③번 요건 관련)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과세가격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고, 수입통관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사전교시제도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해 조회를 요청하고, 세관으로부터 문서 형태로 회답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 회답서를 수입통관 시 제출하게 되면



법령 등에 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회답내용을 존중하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답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세관은 조회신청이 있는 후 원칙적으로 30일(관세평가는 9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

수입허가 전 화물반출제도는 수입허가를 받기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판매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허가를 받기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는 제도(BP ; Before Permit)이다. (④번 요건의 완화) 다른 제도와 구별되는 점은, 동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세관에 제출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동 제도는 귀중품·위험물품, 변질·손상 우려가 있어 빠른 반출이 필요한 물품, 전시회 등 출품을 위한 것으로서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물품, FTA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입금지품, 타법령 허가·승인 등 필요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등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

5. 세관에서 확인하는 수입관계 타법령 개요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경제, 보건위생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법령에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어떤 나라든 이러한 사항은 동일하겠지만, 일본 역시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타법령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 세관에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의 상당수는 타법령의 허가·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통관 절차 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⑤번 요건 관련)

특히, 일부 법령에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않으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일본 관세법 제70조, 관세법 기본통달 70-3-1】(주요사항 발췌)

법령명	주요 품목	주관부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할당품목(청어 등) 수입제한품목(고래 등) 사전확인품목(백신 등)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관리과
조수보호, 관리 및 수렵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조류 및 그 가공품, 짐승 및 그 가공품, 조류의 알	환경성 자연환경국 야생생물과 조수보호관리실
독극물단속법	독극물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의약품심사관리과
의약품, 의약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지정약물, 동물용의약품 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감시지도·마약대책과
수산자원보호법	잉어, 금붕어 기타 붕어류, 장어 등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축수산안전관리과 수산안전실
비료단속법	비료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농산안전관리과
농약단속법	농약	
설탕 및 전분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	설탕, 전분	농림수산업성 정책총괄관 지역작물과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버터, 탈지분유, 연유 등	농림수산업성 생산국 축산부 우유유제품과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 화학물질관리과
식품위생법	모든 음식물, 첨가물, 식기, 포장용기, 장난감 등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생활위생·식품안전기획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우제류, 말, 닭, 토끼, 소세지, 햄 등	농림수산업성 소비안전국 동물위생과
노동안전위생법	유해물질(석면 등)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안전위생부 화학물질대책과

Ⅲ. 맺음말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 나라이다. 특히, 세관 용어,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리만큼 비슷하지만, 실제 통관절차에서 생각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서류 심사, 검사 대상으로 자주 지정되는 경우 수출기업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체되어 거래선으로부터 클레임을 받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등 교역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일본의 제도를 충실하게 파악하고 수출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 식재료 등은 세관 측에서 생산공정, 원재료 등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실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통관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주일본 대사관 또는 KOTRA, aT 등 다양한 기관과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란다.



FTA TRADE REPORT

